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0-7호**  
**2020. 1. 23.(목)**

## 차      례

###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9호) .....1

### 공      고(1)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공고 제2020-85호) .....2

###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0-65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0-75호) .....10

공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227-37, 225-22, 227-49	동산초교로59번길 32-3	2020. 1. 23.	건물신축	동산초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106-4	계족산로9번길 41	2020. 1. 23.	건물신축	계족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183-8	석봉로30번길 13	2020. 1. 23.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183-34	석봉로30번길 13-1	2020. 1. 23.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A4용지 1매 60원	$(800\text{원} \times \text{CD개수}) + (25\text{원} \times \text{면수})$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신청인      국 회 의 원      (인)  
                  의 회 의 원      (인)  
                  예 비 후보자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주)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  
   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함.

####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 2) 전 화 : 042-608-4762
- 3) F A X : 042-608-3832
- 4) E-mail : marmy@korea.kr

####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전화 : 042-608-47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학계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동네 돌봄 수행과 관련된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실무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 전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 확대 및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에너지위원회 위원 정수, 당연직 위원의 조정을 통해 에너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나. 당연직 위원에 ‘교육공동체과장, 도시재생사업단장’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

###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02. 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에너지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전화: 042-608-6934, FAX: 042-608-3831, E-mail: irunn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4.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담당자 김용성(전화: 042-608-69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기후환경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을 “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교육공동체과장, 기후환경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단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은 <u>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기후환경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u>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10조(구성) ① ----- ----- <u>30명</u> ----- ----- ----- -----.</p> <p>② ----- <u>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교육공동체과장, 기후환경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단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20.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